|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1월 0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1-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함에 따라,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자산들의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또는 대량 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17.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월배당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서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하락 및 투자원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담하여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9.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화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높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 환헤지 전략을 실행합니다. 다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펀드내 유동성 비율, 거래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비율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년 11월 05일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 [펀드코드 : EP00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BN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 BNK글로벌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합니다.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자산배분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
· 월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분배금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 분배기준일 :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
3) 분배금지급일 : 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2(분배금의 지급 등), 제31조의3(분배금의 지급연기) 및 투자설명서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여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주식, 대체투자(원자재, 인프라, 리츠 등)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은 채권 관련 ETF에 투자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관련 ETF에는 50% 미만 투자
√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 채권, 실물자산등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추구

**[상세 투자전략]**

① 월배당 특화 유니버스
√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글로벌 월배당/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유니버스 구성
√ 시가총액, 거래량, 배당주기, 배당수익률, 운용보수 등을 종합적 고려
② 투자결정 프로세스
√ 주요 투자결정 요인을 수치로 산출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종목을 검증 및 평가
√ 개별 종목 및 자산군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 | |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0.50% 이내 | **0.800** | 0.40 | 0.900 | 0.8037 | 181 | 316 | 456 | 753 | 1,59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없음 | **1.100** | 0.70 | 1.190 | 1.1000 | 159 | 324 | 494 | 852 | 1,859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25% 이내 | **0.600** | 0.20 | 0.580 | 0.6050 | 137 | 253 | 373 | 628 | 1,35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없음 | **0.750** | 0.35 | 0.730 | 0.7548 | 131 | 267 | 408 | 705 | 1,550 |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보수인 연 0.39%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5.11.06 ~ 26.11.05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25-11-05 | 3.16 | - | - | - | 3.19 |
| 수익률 변동성(%) | 2025-11-05 | 7.56 | - | - | - | 7.56 |

(주1) 비교지수 :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강세진 | 1979 | 책임 (수석매니저)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5년 1개월 |
| 신지환 | 1997 | 부책임 (파트너)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년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강세진- 0개, 0억 / 신지환- 0개, 0억]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 rowspan="11">주요투자<br>위험</td><td colspan="2">·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구분</td><td>투자위험의 주요내용</td></tr>
<tr><td>투자원본<br>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투자신탁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인프라 관련 ETF는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므로 부동산과 대체투자자산을 직접 보유와 관련된 위험이 수반됩니다.</td></tr>
<tr><td>재간접투자위험</td><td>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월 분배금 지급<br>중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자산들의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또는 대량 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월 분배금 지급에<br>따른 원본손실 및<br>분배금 변동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월 분배금<br>지급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월배당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서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하락 및 투자원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월 분배금 지급에<br>따른 과세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담하여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환율변동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td></tr>
<tr><td>환헤지에<br>따른 위험</td><td>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br>해지위험</td><td>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td></tr>
</table>

| | | |
|---|---|---|
| | |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br>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입방법** |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b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br>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
| **환매방법** |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r>**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6영업일(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br>·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r>**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기준가격**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br>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퇴직연금제도 의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집합투자업자** | BNK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18일** |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 | | **Wrap전용(W)** |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01) | | | | | | | |
|---|---|---|---|---|---|---|---|---|
| (클래스) 종류 | Class A | Class A-e | Class C | Class C-e | Class C-F | Class C-W | Class C-P | Class C-Pe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02 | EP003 | EP004 | EP005 | EP006 | EP007 | EP008 | EP009 |
| (클래스) 종류 | Class C-P2 | Class C-P2e | Class A-G | Class C-G | Class S | Class S-P | Class S-P2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10 | EP011 | EP012 | EP013 | EP014 | EP015 | EP016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좌(=1원) 단위로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경남은행, 부산은행 외)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01) | | | | | | | |
|---|---|---|---|---|---|---|---|---|
| (클래스) 종류 | Class A | Class A-e | Class C | Class C-e | Class C-F | Class C-W | Class C-P | Class C-Pe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02 | EP003 | EP004 | EP005 | EP006 | EP007 | EP008 | EP009 |
| (클래스) 종류 | Class C-P2 | Class C-P2e | Class A-G | Class C-G | Class S | Class S-P | Class S-P2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EP010 | EP011 | EP012 | EP013 | EP014 | EP015 | EP016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25.10.02 | 최초 효력발생 |
| 2025.10.31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채권 및 어음 신용등급 변경 |
| 2026.08.12 | 분배금지급일 변경 |
| 2026.11.18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 BNK 자산운용(주) |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11.05 기준)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강세진 | 1979 | 책임 (수석매니저)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5년 1개월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현대자산운용 퀀트운용(4년 4개월)<br>-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퀀트운용(2년 1개월)<br>-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운용(2년 3개월)<br>-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운용(2년 9개월)<br>- BNK자산운용 퀀트운용(2023.07~현재)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ETF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신지환 | 1997 | 부책임 (파트너)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년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BNK자산운용 퀀트운용(2023.12 ~ 현재)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ETF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강세진 | 1979 | 책임 (수석매니저)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5년 1개월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현대자산운용 퀀트운용(4년 4개월)<br>-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퀀트운용(2년 1개월)<br>-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운용(2년 3개월)<br>- 한화자산운용 솔루션운용(2년 9개월)<br>- BNK자산운용 퀀트운용(2023.07~현재)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ETF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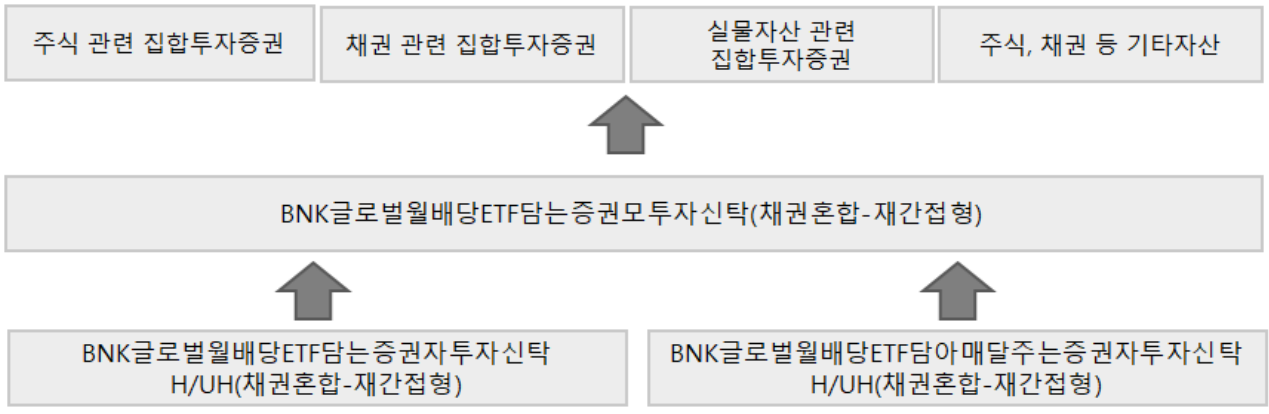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 | |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
|---|---|---|---|---|---|---|---|---|---|
| | | | 집합투자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신지환 | 1997 | 부책임 (파트너) | 7 개 | 755억 | 1.86 | - | 7.71 | 8.11 | 1년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BNK자산운용 퀀트운용(2023.12 ~ 현재)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ETF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클래스 (Class) | 한글 표기 | 가입자격 |
|---|---|---|

| | |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가입제한 없음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 **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 60% 이상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재간접형) | 60% 이상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 60% 이상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재간접형) | 6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주요 투자대상 | - 집합투자증권 : 50% 이상<br>(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 90% 이하,<br>주식 및 기타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 50% 미만) |
| | 투자목적 |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
|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 |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주요 투자전략]<br>-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주식, 대체투자(원자재, 인프라, 리츠 등)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br>-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은 채권 관련 ETF에 투자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관련 ETF에는 50% 미만 투자<br>-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 채권, 실물자산등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추구<br>[위험관리]<br>1) 포트폴리오 모니터링<br>- 개별종목, 자산군, 세부자산군 등으로 분류하여, 성과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br>- 전략별 투자논리와 시장의 방향성에 괴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br>- 시장 변화나 개별종목 이슈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합니다.<br><br>2) 위험요인 분해<br>-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요인을 시장위험, 자산군별 위험, 종목별 위험, 운용전략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분석합니다.<br>- 각 위험 요소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투자전략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리스크 원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br><br>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지표 등 운용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위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및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원자재, 인프라 등과 관련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군, 섹터, 지역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의 순자산규모, 유동성, 배당수익률 및 배당주기, 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운용의 투명성 및 유동성 등 해당 거래의 상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블룸버그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주1)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수익증권 (모수익증권) | 60% 이상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② | 파생상품 |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③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br>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br>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br>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④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 내지 ②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 제4호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2조 제4호 및 위의 ① 내지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주1)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집합투자증권 | 50% 이상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
| | | 다만,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주식 및 기타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50% 미만으로 합니다. | |
| ② | 주식 | 50% 미만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
| ③ | 채권 | 50% 미만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
| ④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⑤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
| ⑥ | 파생상품 |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

| | | | |
|---|---|---|---|
| | | |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하며,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⑦ | 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
| ⑧ | 증권의 대여 주2) |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
| ⑨ | 증권의 차입 주3) | 20% 이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
| ⑩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위의 ①~⑥의 규정 및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2조제4호 및 ①~⑥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내용 |
|---|---|
| ①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③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④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⑤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나. 투자제한 ②~④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내용 |
|---|---|
| ①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②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

| | |
|---|---|
| | 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 ③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r>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br>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집합투자기구가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br>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④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⑤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⑥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⑦ |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⑧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
|---|---|
| ⑨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⑦~⑨,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의 가목 및 나목, ⑤ 내지 ⑦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제한 ③의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모투자신탁 기준)**

이 투자신탁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사 | 홈페이지 주소 |
|---|---|
| AllianceBernstein | alliancebernstein.com |
| Angel Oak | angeloakms.com |
| Eldridge | eldridge.com |
| First Trust | ftportfolios.com |
| Global X | globalxetfs.com |
| iShares | ishares.com/us |
| KraneShares | kraneshares.com |
| MorganStanley | morganstanley.com |
| Neos Investment | neosfunds.com |
| PGIM | pgim.com |
| Simplify | simplify.us |
| SPDR | sectorspdrs.com |
| Summit Global Investment | sgiam.com |

| | |
|---|---|
| Tortoise Capital | tortoisecapital.com |

주) 상기 내용은 9.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 중,"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종목"에 해당하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채권, 주식, 대체투자(원자재, 인프라, 리츠 등)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아래『월분배금의 지급 사항』과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고,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2(분배금의 지급 등), 제31조의3(분배금의 지급연기) 및 투자설명서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분배금의 지급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 분배기준일 :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 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
3. 분배금지급일 : 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여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2)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형 자투자신탁**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달러 기준으로 헤지를 수행합니다**.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목표 |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달러화(US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므로 외화 |

| | |
|---|---|
| 헤지비율 | 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에 대해서 미달러(USD)로 투자된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br>다만, 미달러화(USD) 등의 통화 대비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br>또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이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 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 환헤지 장·단점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 환헤지의 비용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 환헤지가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므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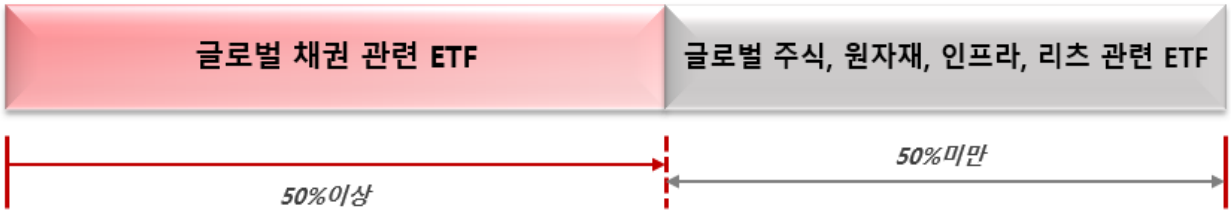
**▶ BNK글로벌월배당ETF담는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 투자전략**

**1)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주식, 대체투자(원자재, 인프라, 리츠 등) 관련 글로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은 채권 관련 ETF에 투자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관련 ETF에는 50% 미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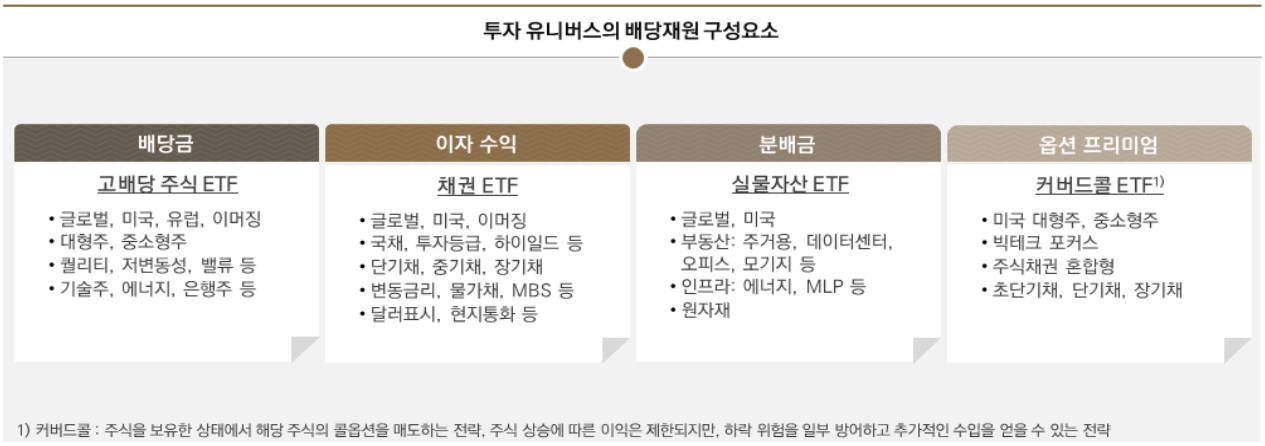

√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 채권, 실물자산등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추구

**2) 세부 투자전략**

① 월배당 특화 유니버스

√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글로벌 월배당/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유니버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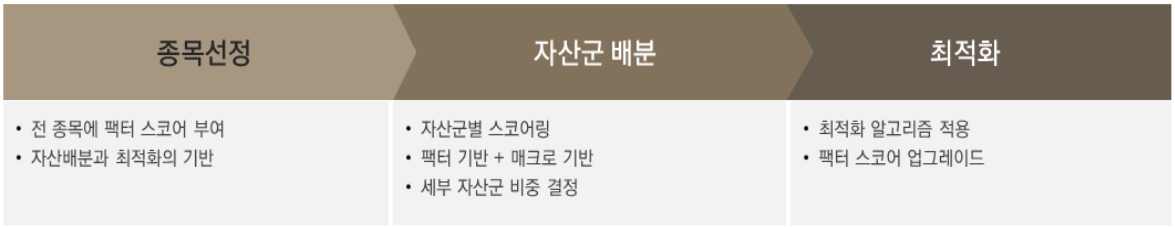
√ 시가총액, 거래량, 배당주기, 배당수익률, 운용보수 등을 종합적 고려




② 투자결정 프로세스

√ 주요 투자결정 요인을 수치로 산출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종목을 검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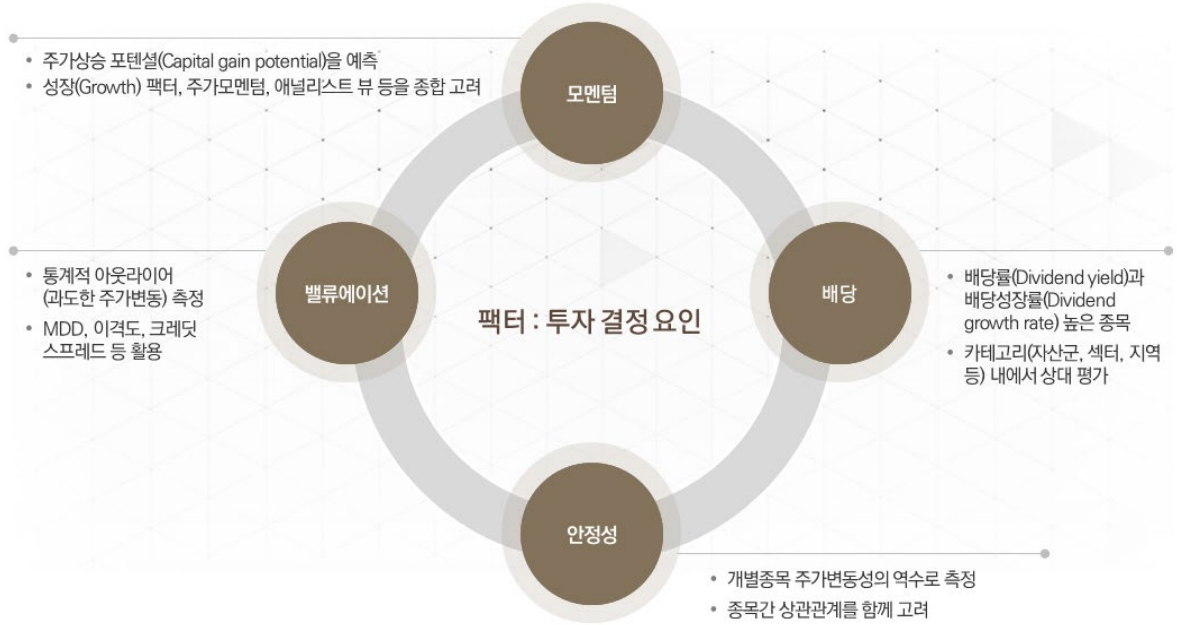
√ 개별 종목 및 자산군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종목 선정]

- 투자유니버스에 속한 모든 종목들을 주요 투자결정 요인(모멘텀, 밸류에이션 등)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압축

(CLO관련 ETF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 종목 평가 시 고려되는 "투자결정 요인"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추가 삭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산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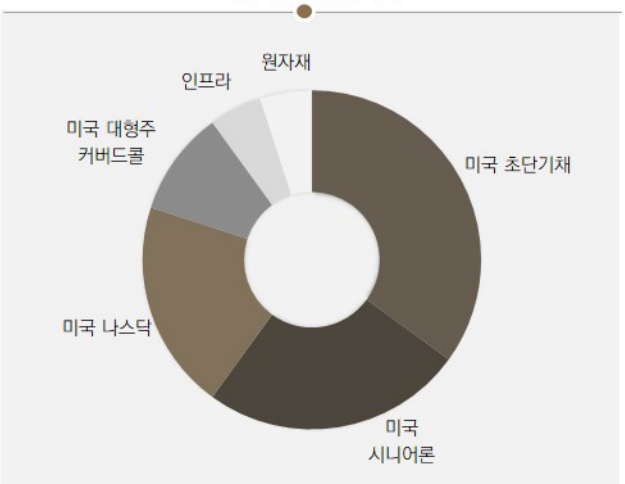
- 종목별 평가결과와 자산군별 투자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배분안 도출
- 기준금리, 명목금리, 장단기금리차, 크레딧스프레드, 기대인플레이션 등 거시지표 기반으로 자산군별 투자환경을 평가

**자산군 세부분류 예시**

| | | |
|---|---|---|
| 채권 | • 글로벌 초단기채: 전 세계 단기채·현금성 채권 (BBB- 이상)<br>• 미국 국채 단기채 커버드콜: 단기 미국채(AA+)에 콜옵션 매도<br>• 미국 시니어론: 1순위 담보 변동금리 대출(BB+ 이하)<br>*미국 시니어론 12개월 부도율은 2025년 7월 기준 약 1.11%. 팬데 믹 고점(1.75~2.07%) 이후 현재수준으로 낮아진 상태 (지급불능 기준, 출처: PitchBook 2025)<br>• 미국 투자등급 장기채: 미 기업의 장기 투자등급 채권(AAA~BBB-)<br>• 이머징 하이일드: 신흥국 하이일드 채권(BB+ 이하) | 60% 이상 |
| 주식 | • 미국 나스닥: 나스닥 성장주 주식<br>• 미국 중소형주 커버드콜: 미국 중소형주 지수에 콜옵션 매도<br>• 미국 대형주 고배당: 배당성향 높은 미국 대형주<br>• 미국 에너지: 미국 에너지 밸류체인 기업 | 30% 이하 |
| 실물 자산 | • 원자재: 귀금속, 가스, 원유, 농산물 등<br>• 인프라: 유틸리티,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자산<br>• 미국 리츠: 미국 오피스, 물류, 주거, 데이터센터 등 | 10% 이하 |

신용등급: S&P기준 / 자료 : BNK자산운용

**자산군 배분 산출 예시**




자료 : BNK자산운용

※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도록 운용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 자산군 | 종목명 | 운용사 | 주된투자자산 | 주된투자전략 | 운용규모 (억 USD) | 비중(%) |
|---|---|---|---|---|---|---|
| 채권 | SPDR Bloomberg 1- | State Street | 해외채권 | 만기 1~3 개월 | 497.90 | 9.12% |

| | | | | | | |
|---|---|---|---|---|---|---|
| | 3 Month T-Bill ETF | | | 미국 국채 투자 | | |
| 채권 | NEOS Enhanced Income 1-3 Month T-Bill ETF | NEOS | 해외채권 | 미국 초단기 국채 및 옵션 인컴 전략 | 19.10 | 8.54% |
| 채권 | SGI Enhanced Core ETF | Summit Global Investments | 해외채권 | 미국 단기채권 및 초단기 옵션 인컴 전략 | 2.96 | 7.63% |
| 채권 | PIMCO Senior Loan Active ETF | PIMCO | 해외채권 | 선순위 변동금리 대출채권 투자 | 6.40 | 6.55% |
| 채권 | iShares J.P. Morgan EM High Yield Bond ETF | BlackRock | 해외채권 | 신흥국 고수익채권 투자 | 5.96 | 5.06% |
| 채권 | iShares Short Treasury Bond ETF | BlackRock | 해외채권 | 만기 1 년 이하 미국 국채 투자 | 228.30 | 4.89% |
| 채권 | Simplify Treasury Option Income ETF | Simplify | 해외채권 | 미국 단기국채 및 옵션 인컴 전략 | 5.09 | 3.79% |
| 채권 | T. Rowe Price Floating Rate ETF | T. Rowe Price | 해외채권 | 변동금리 대출채권 투자 | 8.62 | 3.28% |
| 채권 | Angel Oak UltraShort Income ETF | Angel Oak | 해외채권 | 초단기 채권 분산투자 | 13.64 | 3.04% |
| 채권 | VanEck J.P. Morgan EM Local Currency Bond ETF | VanEck | 해외채권 | 신흥국 현지통화 표시 국채 투자 | 49.49 | 2.30% |
| 채권 | Invesco Emerging Markets Sovereign Debt ETF | Invesco | 해외채권 | 달러표시 신흥국 국채 투자 | 11.68 | 1.79% |
| 주식 |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 State Street | 해외주식 | 미국주식 에너지 섹터 투자 | 391.30 | 4.87% |
| 주식 | Goldman Sachs Nasdaq-100 Premium Income ETF | Goldman Sachs | 해외주식 | 나스닥 100 주식 및 콜옵션 인컴 전략 | 62.41 | 4.34% |
| 주식 | Vanguard Energy ETF | Vanguard | 해외주식 | 미국주식 에너지 섹터 투자 | 103.80 | 4.15% |
| 주식 | Vanguard FTSE Pacific ETF | Vanguard | 해외주식 |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주식 투자 | 89.27 | 2.84% |

| | | | | | | |
|---|---|---|---|---|---|---|
| 주식 | Dimensional Emerging Markets Value ETF | Dimensional | 해외주식 | 신흥국 가치주 투자 | 21.00 | 2.82% |
| 주식 |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 Charles Schwab | 해외주식 | 미국 우량 배당주 투자 | 1,078.90 | 2.66% |
| 주식 | Alerian Energy Infrastructure ETF | ALPS / SS&C | 해외주식 | 미국·캐나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투자 | 5.18 | 2.16% |
| 주식 | First Trust Developed Markets ex-US AlphaDEX Fund | First Trust | 해외주식 | 미국 제외 선진국 주식 팩터전략 투자 | 13.59 | 1.85% |
| 주식 | Alerian MLP ETF | ALPS / SS&C | 해외주식 | 미국 에너지 미드스트림 MLP 투자 | 126.20 | 1.77% |
| 주식 |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 State Street | 해외주식 | 미국주식 헬스케어 섹터 투자 | 433.90 | 1.40% |
| 주식 | WisdomTree Japan Hedged Equity Fund | WisdomTree | 해외주식 | 일본 배당주 투자 및 엔화환율 헤지 | 70.93 | 1.40% |
| 주식 | Invesco KBW Premium Yield Equity REIT ETF | Invesco | 해외주식 | 미국 중소형 고배당 리츠 투자 | 3.03 | 1.32% |
| 대체 | FT Vest Gold Strategy Target Income ETF | First Trust / Vest | 원자재 | 금 가격 노출 및 옵션 인컴 전략 | 6.10 | 3.43% |
| 대체 | iShares Silver Trust | BlackRock | 원자재 | 은 현물 가격 추종 | 299.60 | 1.32% |
| 대체 | SPDR Gold Shares | State Street | 원자재 | 금 현물 가격 추종 | 1,417.00 | 0.54% |
| 현금 | 예금잔고 | - | 현금 | 예금 잔액 보유 | | 6.69% |
| 현금 | USD CASH | - | 해외현금 | 미국 달러 현금 보유 | | 0.45% |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작성일(2026년 09월 30일) 기준이며, 설정지역은 미국이며, 표시통화는 USD입니다. 각 자산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펀드의 특징을 대표하는 일부 ETF를 선별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제 운용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위험 관리**

1)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 개별종목, 자산군, 세부자산군 등으로 분류하여, 성과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전략별 투자논리와 시장의 방향성에 괴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 시장 변화나 개별종목 이슈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2) 위험요인 분해
-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요인을 시장위험, 자산군별 위험, 종목별 위험, 운용전략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분석합니다.
- 각 위험 요소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투자전략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리스크 원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지표 등 운용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환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나,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환매 및 상환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규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 |
|---|---|
| 1단계 (주의) | • 리스크관리팀 및 운용본부 상호 점검 및 통보<br>• 운용본부는 시장급변에 따른 위탁자산 영향을 점검<br>- 위기상황으로 판단시에는 2단계 절차를 진행 |
| 2단계 (경계) | • 관련 운용본부는 지체없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기점검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br>- 발생현황, 원인분석, 향후 전망, 관련부서 협조사항<br>- 집합투자재산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

| | |
|---|---|
| 3단계 (위기) |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하므로 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 및 외화표시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등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신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투자신탁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부동산, 리츠, 인프라 관련 ETF는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므로 부동산과 대체투자자산을 직접 보유와 관련된 위험이 수반됩니다. |
| 재간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 |

| | |
|---|---|
| | 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매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여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재간접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br>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해외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자산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개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므로, 자산배분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

| | |
|---|---|
| |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상장폐지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국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해외투자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합투자기구는 소수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자금송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하므로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 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거래비용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ETF) 보다 많은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헤지에 따른 위험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환매청구시 재간접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br>일반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은 일정기간 이전에 기평가된 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게 됩니다.<br>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운용되며 이에 |

| | |
|---|---|
| |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관련국의 조세제도, 투자제한 등과 관련한 정책 내지 정책의 변화 및 관련 공시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한 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및 이 집합투자기구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해외 자산이 거래되는 특정국의 세법에 의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반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후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면에서의 영향은 투자자의 자산, 투자자의 세법상 지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사는 세제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어떠한 사전적 내지는 사후적 보장을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 월 분배금 지급 중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분배금을 매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하는 자산들의 부도발생, 현저한 거래부진 또는 대량 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원본손실 및 분배금 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월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
| 월 분배금 지급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이 월배당금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의 투자원본에서 월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하락 및 투자원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과세위험 |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수령시 세금을 부담하여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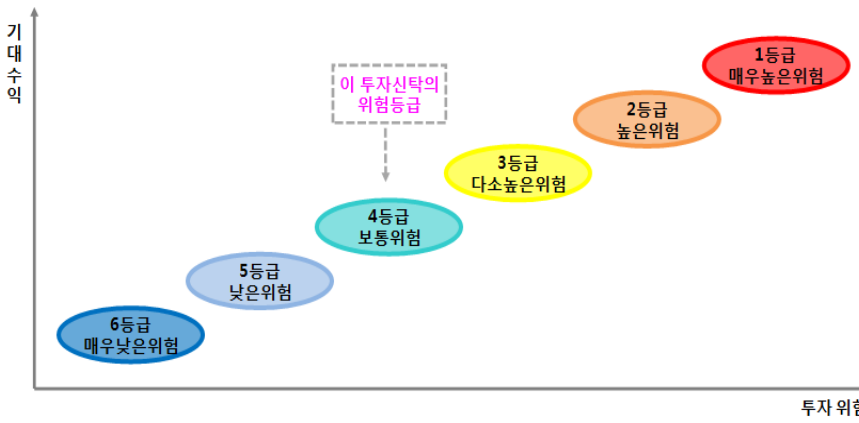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과세 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환매대금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나. 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차거래 위험 |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위험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입수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본 펀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글로벌 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 채권, 원자재 및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 위험등급 | | 분류기준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다소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낮은 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수익률 변동성 기준(97.5% Var 모형 사용) - 설정 후 3년 경과 시]**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낮은위험 |
| 97.5% VaR | 50%초과 | 50%이하 | 30%이하 | 20%이하 | 10%이하 | 1%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 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 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Class) | 한글 표기 | 가입자격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가입제한 없음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br>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 **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
| **S-P**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개인연금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
| **S-P2** | 수수료미징구- |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 |

| | | |
|---|---|---|
| | 온라인-퇴직연금 | 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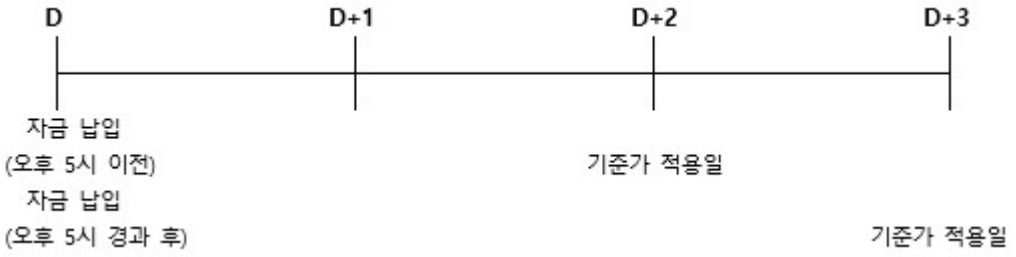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영업일(D+5)**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D+6)**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중도환매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 - | - | 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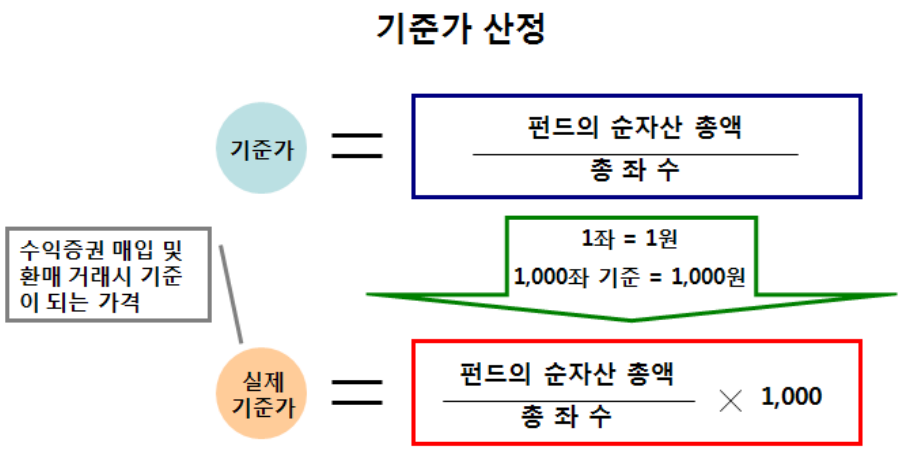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 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는 1주(Share)당 순자산가치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의 발행된 총주식수로 나누어 달러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
| ④장외파생상품 |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
| ⑤상장채권<br>(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⑥비상장채권<br>(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⑧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⑨해외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⑩외화표시 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
| ⑪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Class) | 한글 표기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부과기준 | | 납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 없음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납입금액의 0.25% 이내 | - |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 | - |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 - |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 |
| **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납입금액의 0.30% 이내 | - |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 |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 | - |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

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3)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Class) | 한글 표기 |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 |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및비용 | 동종유형총보수 | 합성 총보수 및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 증권거래비용 |
| 지급시기 | - | 매 3개월 | | | | - | 사유발생시 | - | - | - | 사유발생시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0.35 | 0.40 | 0.03 | 0.02 | **0.80** | 0.0037 | **0.8037** | 0.900 | **1.2849** | 0.1733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 0.20 | | | **0.60** | 0.0050 | **0.6050** | 0.580 | **1.0934** | 0.1897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0.70 | | | **1.10** | 0.0000 | **1.1000** | 1.190 | **1.5521** | 0.1562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0.35 | | | **0.75** | 0.0048 | **0.7548** | 0.730 | **1.2775** | 0.2500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 0.03 | | | **0.43** | 0.0072 | **0.4372** | - | **0.9433** | 0.2289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0 | | | **0.40** | 0.0037 | **0.4037** | - | **0.8849** | 0.1733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0.60 | | | **1.00** | 0.0037 | **1.0037** | - | **1.4849** | 0.1733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0.30 | | | **0.70** | 0.0000 | **0.7000** | - | **1.1498** | 0.0557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0.55 | | | **0.95** | 0.0037 | **0.9537** | - | **1.4349** | 0.1733 |
| **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0.27 | | | **0.67** | 0.0049 | **0.6749** | - | **1.1433** | 0.1595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0.25 | | | **0.65** | 0.0037 | **0.6537** | - | **1.1349** | 0.1733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0.40 | | | **0.80** | 0.0037 | **0.8037** | - | **1.2849** | 0.1733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 | | 0.15 | | | **0.55** | 0.0037 | **0.5537** | - | **1.0349** | 0.1733 |

| | | | | | | | | | | | |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 0.12 | | | **0.52** | 0.0037 | **0.5237** | - | **1.0049** | 0.1733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0.10 | | | **0.50** | 0.0037 | **0.5037** | - | **0.9849** | 0.1733 |

* 직전 회계연도 : 2025.11.05 - 2026.11.04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약 [**0.39**]%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2026.09.30기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Class A, C-W, C-P, C-P2, A-G, C-G, S, S-P, S-P2는 미설정된 클래스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운용중인 동 펀드의 타 클래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기타비용 | 299 |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9,475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 종류(클래스) | | | 1 년후 | 2 년후 | 3 년후 | 5 년후 | 10 년후 |
|---|---|---|---|---|---|---|---|
| **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32 | 217 | 305 | 494 | 1,038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81 | 316 | 456 | 753 | 1,594 |
| **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87 | 151 | 219 | 362 | 779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37 | 253 | 373 | 628 | 1,357 |
| **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13 | 230 | 352 | 609 | 1,346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 159 | 324 | 494 | 852 | 1,859 |

| | | | | | | | |
|---|---|---|---|---|---|---|---|
| | |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 | | | |
| **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7 | 158 | 242 | 421 | 939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31 | 267 | 408 | 705 | 1,550 |
| **C-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45 | 92 | 141 | 245 | 552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97 | 197 | 302 | 524 | 1,163 |
| **C-W**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41 | 85 | 130 | 227 | 511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91 | 185 | 283 | 492 | 1,094 |
| **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03 | 210 | 321 | 557 | 1,234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52 | 310 | 473 | 816 | 1,784 |
| **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72 | 147 | 225 | 391 | 873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18 | 240 | 367 | 636 | 1,403 |
| **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98 | 199 | 305 | 530 | 1,175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47 | 299 | 457 | 789 | 1,728 |
| **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9 | 141 | 217 | 377 | 843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17 | 239 | 365 | 633 | 1,396 |
| **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97 | 166 | 239 | 393 | 842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46 | 266 | 391 | 655 | 1,396 |
| **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82 | 168 | 258 | 448 | 997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32 | 268 | 410 | 709 | 1,558 |
| **S** | 수수료후취-온라인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9 | 129 | 175 | 307 | 692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19 | 230 | 328 | 571 | 1,267 |
| **S-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54 | 110 | 168 | 293 | 658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103 | 210 | 321 | 558 | 1,235 |
| **S-P2**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52 | 106 | 162 | 282 | 634 |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 | 101 | 206 | 315 | 547 | 1,212 |

| | | | | | | | |
|---|---|---|---|---|---|---|---|
| | |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 | |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 보수)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평균)의 최근 보수인 연 **0.39%**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종류별로 총 보수 ·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조금 안되는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0%, Class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25%, Class A-G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30%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Class S의 경우 1년 후는 그 시점에 환매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 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배금의 지급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또는 이익금을 초과한 분배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현금 분배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들의 추정 수익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2. 분배기준일 : 최초설정일 익월부터 매월 20일. 다만, 매월 20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매월 20일의 익영업일로 합니다.
3. 분배금지급일 : 분배기준일로부터 2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분배금의 지급연기*

① 집합투자규약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분배금 미지급 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2.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이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증권시장 등의 폐쇄 ·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매각할 수 없어 분배금에 충당할 현금마련이 곤란한 경우

②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의 100%까지 잠식된 경우에도 분배금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분배금의 지급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분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분배금 지급을 재개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분배하므로 분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지구가 매월 지급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우선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배금 지급 시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투자원본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경우를 포함(이에 제한되지 아니합니다)하여 분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월분배금을 수시 변경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S-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납입금액]<br>-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br>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br>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br>[세액공제]<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 **분리과세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br>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S-P2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세액공제** |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br>※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과세이연** |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 **과세체계 다양성** |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1기( 2025.11.05 - 2026.11.04 )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1기 | | |
| | ( 2026.11.04 ) | | |
| 운용자산 | 4,058,087,760 | | |
| 증권 | 3,792,916,386 | | |
| 파생상품 | -12,037,786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277,209,160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기타자산 | 4,700,216 | | |
| 자산총계 | 4,062,787,976 | |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17,260 | | |
| 부채총계 | 17,260 | | |
| 원본 | 4,056,659,716 | | |
| 수익조정금 | -128,103 | | |
| 이익잉여금 | 6,239,103 | | |
| 자본총계 | 4,062,770,716 | |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1기 | | |
| | ( 2025.11.05 - 2026.11.04 ) | | |
| 운용수익 | 168,836,538 | | |
| 이자수익 | 2,881,347 | | |
| 배당수익 | 0 | | |
| 매매/평가차익(손) | 165,955,191 | | |
| 기타수익 | 0 | | |

| | | | |
|---|---|---|---|
| 운용비용 | 200,470 | | |
| 관련회사 보수 | 0 | | |
| 매매수수료 | 0 | | |
| 기타비용 | 200,470 | | |
| 당기순이익 | 168,636,068 | | |
| 매매회전율 | 0.00 | | |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2025.11.05 - 2026.11.04 ) | | | 전기 | | |
|---|---|---|---|---|---|---|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 0 | 0 | 0 | -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0 | 0 | 0 | - | - | - |
| 합계 | 0 | 0 | 0 | - | - | -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0 | 0 | 0 | 0 | 0 | 0 | 32.67 |

주1) 동종유형이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BNK 글로벌월배당 ETF 담는증권모(채권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기( 2025.11.05 - 2026.11.04 ) | | | 전기 | | |
|---|---|---|---|---|---|---|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 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 0 | 0.0008 | 0.9901 | -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27,137 | 14.9233 | 0.055 | - | - | - |
| 합계 | 27,137 | 14.9241 | 0.055 | - | - | -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BNK 글로벌월배당 ETF 담는증권모(채권혼합-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2 | 0 | 0 | 0 | 0 | 0 | 32.67 |

주1) 동종유형이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해당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과 목 | 제1기( 2026.11.04 ) | | | |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277,209,160 |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77,209,160 | | | |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 | | | |
| 1. 콜론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3,792,916,386 | | | |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3,792,916,386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12,037,786 | | | | |
| 1. 파생상품 | -12,037,786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 | |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4,700,216 | | |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76,820 | | | |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4,623,396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4,062,787,976 | | | |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 | | |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17,260 | | |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17,260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17,260 | | | |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4,056,659,716 |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6,111,000 | | | | | |
| (발행좌수 당기: 4,056,659,716 좌 | 이익잉여금 | 6,239,103 | | | | |
| 전기: 0 좌 | 수익조정금 | -128,103 | | | | |
| 전전기: 0 좌) | | | | | | |
| (기준가격 당기: 1,001.51 원 | | | | | | |
| 전기: 0.00 원 | | | | | | |
| 전전기: 0.00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4,062,770,716 |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4,062,787,976 | | | | |

##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제1기( 2025.11.05-2026.11.04 ) | | | |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2,881,347 | | | | |
| 1. 이 자 수 익 | 2,881,347 | | | |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617,689,898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581,102,214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36,587,684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451,734,707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60,882,083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390,816,000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손실 | 36,624 | | | | | |
| 운 용 비 용 | | 200,470 | | | | |
| 1. 운용수수료 | | | | | | |
| 2. 판매수수료 | | | | | | |
| 3. 수탁수수료 |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200,470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168,636,068 | | | |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041570178 | |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5.11.05 - 2026.11.04 | 0 | 0 | 41 | 41 | 1 | 1 | 41 | 41 |

► Class별 기준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A-e | 2025.11.05 - 2026.11.04 | 0.00 | 0.00 | 0.72 | 0.74 | 0.32 | 0.33 | 0.41 | 0.41 |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회계기간 중 | | 기간말 잔고 |
|---|---|---|---|---|---|
| | | | 설정(발행) | 환매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 C | 2025.11.05 -<br>2026.11.04 | 0.000 | 0.000 | 0.001 | 0.001 | 0.000 | 0.000 | 0.001 | 0.001 |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C-e | 2025.11.05 -<br>2026.11.04 | 0.00 | 0.00 | 0.35 | 0.36 | 0.20 | 0.21 | 0.15 | 0.15 |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C-F | 2025.11.05 -<br>2026.11.04 | 0 | 0 | 40 | 40 | 0 | 0 | 40 | 40 |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C-Pe | 2025.11.05 -<br>2026.11.04 | 0.00 | 0.00 | 0.03 | 0.03 | 0.00 | 0.00 | 0.03 | 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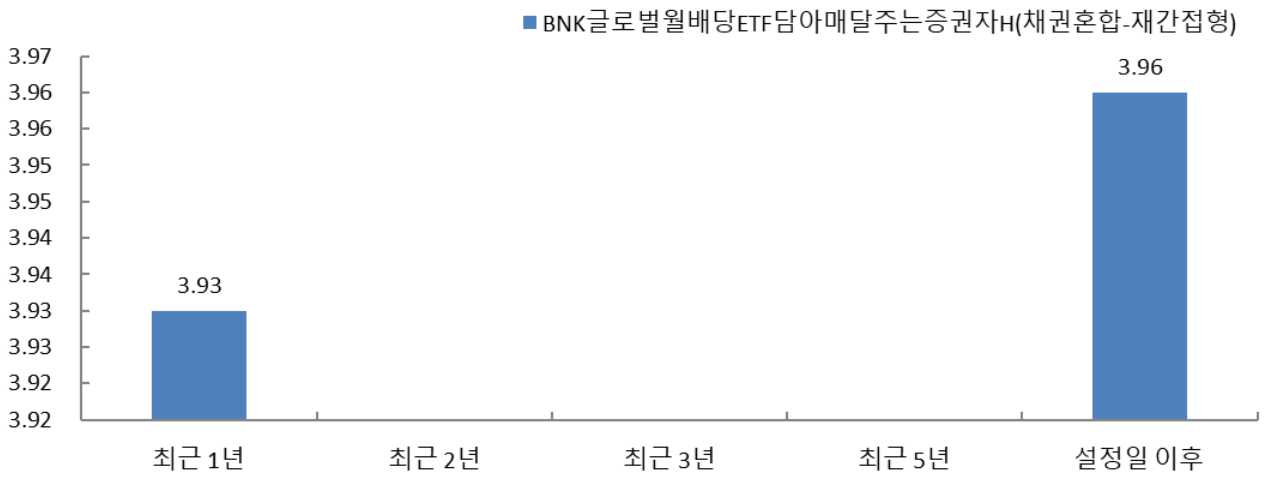
(단위 : 억좌, 억원)

| Class | 기간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C-P2e | 2025.11.05 -<br>2026.11.04 | 0.00 | 0.00 | 0.19 | 0.19 | 0.08 | 0.08 | 0.11 | 0.10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다를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25.11.06 ~ 26.11.05 | - | - | - | 25.11.05 ~ 26.11.05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H(채권혼합-재간접형) | 3.93 | - | - | - | 3.96 |
| 수익률변동성(%) | 7.56 | - | - | - | 7.56 |
| A-e | 3.31 | - | - | - | 3.34 |
| 수익률변동성(%) | 7.56 | - | - | - | 7.56 |
| C | - | - | - | - | -6.90 |
| 수익률변동성(%) | - | - | - | - | 4.49 |
| C-e | 3.16 | - | - | - | 3.19 |
| 수익률변동성(%) | 7.56 | - | - | - | 7.56 |
| C-F | 3.48 | - | - | - | 3.51 |
| 수익률변동성(%) | 7.56 | - | - | - | 7.56 |
| C-Pe | - | - | - | - | -7.42 |
| 수익률변동성(%) | - | - | - | - | 4.56 |
| C-P2e | - | - | - | - | -4.08 |
| 수익률변동성(%) | - | - | - | - | 5.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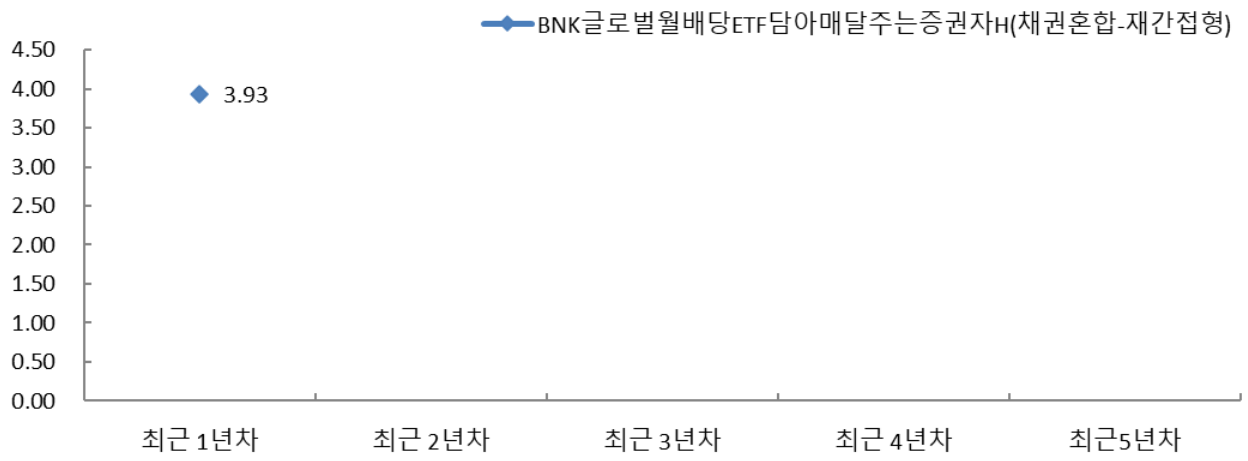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
| | 25.11.06 ~ 26.11.05 | - | - | - | - |
| BNK글로벌월배당ETF담아매달주는증권자H(채권혼합-재간접형) | 3.93 | - | - | - | - |
| A-e | 3.31 | - | - | - | - |
| C | - | - | - | - | - |
| C-e | 3.16 | - | - | - | - |
| C-F | 3.48 | - | - | - | - |
| C-Pe | - | - | - | - | - |
| C-P2e | -4.11 | - | -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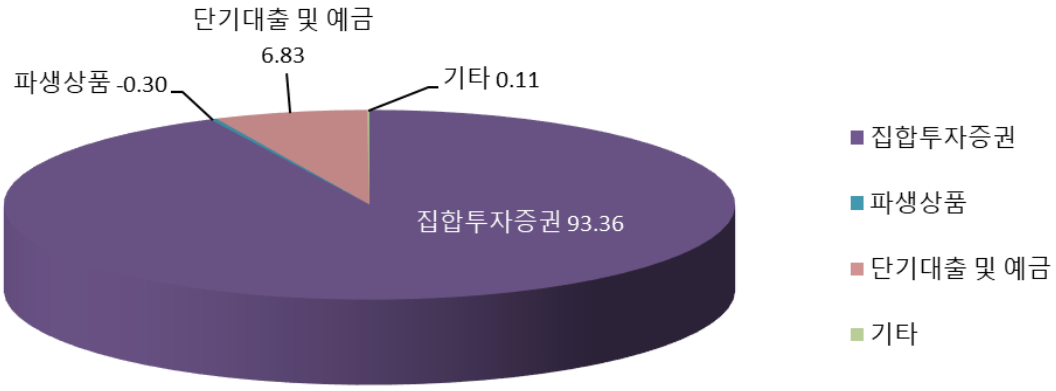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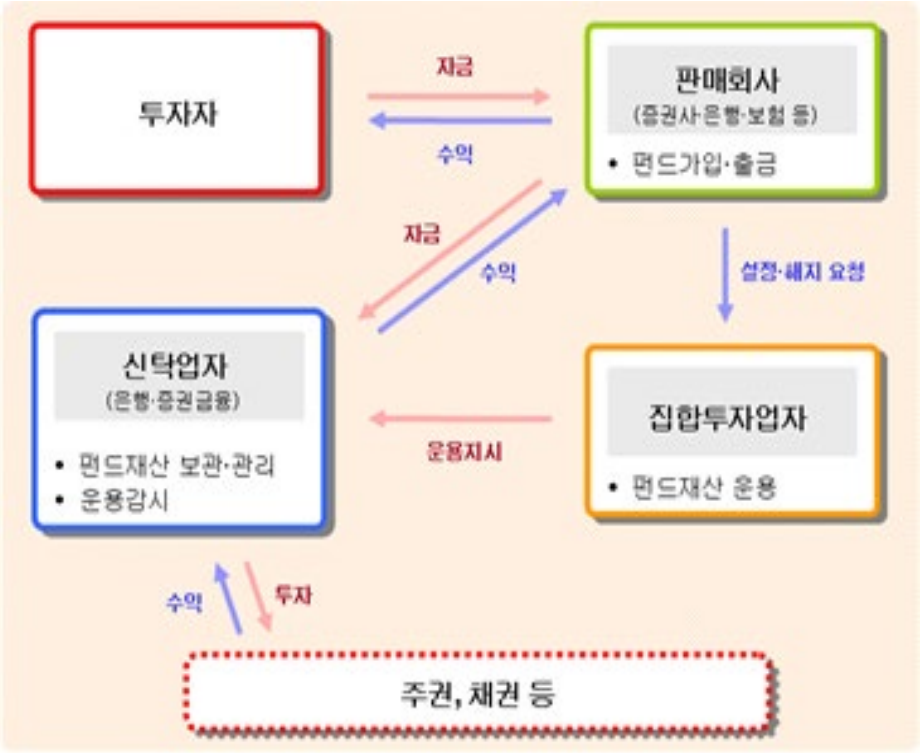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11.04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38 | 0 | 0 | 0 | 0 | 0 | 3 | 0 | 41 |
| | (0.00) | (0.00) | (0.00) | (93.08) | (0.00) | (0.00) | (0.00) | (0.00) | (0.00) | (6.80) | (0.11) | (100.00) |
| USD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합계 | 0 | 0 | 0 | 38 | 0 | 0 | 0 | 0 | 0 | 3 | 0 | 41 |
| | (0.00) | (0.00) | (0.00) | (93.36) | (0.00) | -(0.30) | (0.00) | (0.00) | (0.00) | (6.83) | (0.11) | (100.00) |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2026.11.05 기준)

| | |
|---|---|
| 회사명 |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21층<br>(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
| 회사 연혁 |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br>2015.07 자본금 증자(+40.5 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br>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 억)<br>2018.11 자본금 증자(+30 억)<br>2020.08 자본금 증자(+30 억)<br>2021.05 자본금 증자(+156.25 억) |
| 자본금 | 416.75 억 |
| 주요 주주현황 | BNK 금융지주(100%) |
| 이해관계인 | 한국증권금융<br>(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4.12.31 | '25.12.31 | 항 목 | '24.01.01~<br>'24.12.31 | '25.01.01~<br>'25.12.31 |
| 현금및예치금 | 4,046 | 5,398 | 영업수익 | 26,589 | 33,313 |
| 유가증권 | 169,120 | 187,543 | | | |
| 대출채권 | 25 | 31 | | | |
| 유형자산 | 1,527 | 4,858 | 영업비용 | 17,348 | 19,862 |
| 기타자산 | 4,968 | 6,078 | | | |
| **자산총계** | **179,686** | **203,908** | 영업이익 | 9,241 | 13,451 |
| 예수부채 | 220 | 192 | | | |
| 기타부채 | 5,905 | 14,172 | 영업외수익 | 2,303 | 7,675 |
| **부채총계** | **6,125** | **14,364** | | | |
| 자본금 | 41,675 | 41,675 | 영업외비용 | 196 | 54 |
| 자본잉여금 | 109,079 | 109,079 | | | |
| 이익잉여금 | 22,807 | 38,790 | | | |
| 자본조정 | 0 | 0 | 경상이익 | 11,348 | 21,072 |
| 기타포괄손익<br>누계액 | 0 | 0 | 법인세 등 | 2,738 | 5,089 |
| | | | 당기순이익 | 8,610 | 15,983 |
| **자본총계** | **173,561** | **189,544** | | | |

**라. 운용자산 규모(2026.11.05 기준 /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단기금융 | 총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 | 파생형 | | | | | |
| 수탁고 | 6,225 | 19,049 | 1,628 | 0 | 709 | 1,050 | 4,107 | 0 | 2,010 | 66,218 | 100,99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br>☏ 02-2073-7114 |
| 회 사 연 혁 등<br>(홈 페 이 지 참 조) | www.kbstar.com |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br>☏ 02-2168-0400 |
| 회사연혁등<br>(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fundpartners.com |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이지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br>☏ 02-2251-13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br>☏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br>☏ 02-3215-14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br>☏ 02-721-53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br>☏ 02-785-1410 |
| 회사연혁등<br>(홈페이지 참조) | www.koreaap.com | www.nicepni.co.kr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www.egap.co.kr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내 용 |
|---|---|
| <증권거래> | ①선정시 고려사항<br>-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br>-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br>-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br>-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br><br>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br>-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br>-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br>-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br>[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br>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br>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br>다. 마케팅비용<br>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br>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 <장내파생상품거래> |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 | |
|---|---|
| 투자주체 |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
| 투자목적 |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
| 투자승인일자 | 2025.09.10 |
| 투자시기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
| 투자금액 | 10억원<br>※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2호에 의해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인 집합투자기구 |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할 계획 (* 의무투자금액 10억원의 경우 주1), 주2) 참조) |
|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 (단, 분할 횟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어야 하며, 1회당 회수 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함. 또한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 |

| | |
|---|---|
| | 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주1) 의무투자금액(10억원)의 경우 의무투자기간(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사유 발생
-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2) 의무투자금액(10억원)의 경우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추가투자**

| | |
|---|---|
| 투자주체 |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
| 투자목적 |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시딩 및 고유자금 운용 |
| 투자시기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
|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 30억원 (자금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할 계획) |
|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 (단,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 [붙임] 용어풀이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